

1. 개정이유

국방부 직제시행규칙 상 국직부대·기관에 대한 국방부 지도·감독부서 정비, 정원표 상 공무원 직렬 조정, 일부 부서 업무분장 개선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령 상 국직부대·기관 중 일부만 국방부 지도·감독부서가 지정되어 있어, 미지정된 국직부대·기관에도 지도·감독부서 추가 지정
- 나. 국방부 공무원 보직·진급 등에 있어 탄력적 인사관리를 위해 정원표 상 각 직급(6~9급)에 소수직렬(방재안전직, 방호직, 전산직 등) 추가
- 다. 실·국 간 업무 혼란 해소 및 부서별 수행업무 현실화·명확화를 위해 일부 부서장의 업무 범위·내용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군재정관리단 업무의 지도·감독

제4조의2제1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항제6호를 삭제한다.

1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제5조제3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감독

제9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제9조제7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업무의 지도·감독

제9조제8항제10호 중 “국방정신교육정책”을 “국방 정신전력교육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방정신교육”을 “국방 정신전력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정훈교육지침”을 “정신전력교육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정신교육”을 “정신전력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방정신전력원 업무의 지도·감독

제9조제15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의 지도·감독

제10조제4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군인쇄창 업무의 지도·감독

제10조제6항제12호 중 “관련 조직”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방부조사본부의 업무(군기·안전·사고예방)의 지도·감독

제11조제7항제1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계부처와의”를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략 수립 및 관련 지자체·부처·기관 협의”를 “「국유재산법」 제4장제6절에 따른 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4. 지뢰제거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66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6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2
비서(8급 상당)	1
일반직 계	661
고위공무원단	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6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9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6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
기계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37
전문경력관 가군(기획연구관)	1
전문경력관 가군(현황분석관)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영사기사)	1
전문경력관 나군(보안관리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존사)	1
전문경력관 나군(상훈관리사)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사)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670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6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2
비서(8급 상당)	1
일반직 계	662
고위공무원단	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7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호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9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	

주사보·전산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3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6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
기계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37
전문경력관 가군(기획연구관)	1
전문경력관 가군(현황분석관)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영사기사)	1
전문경력관 나군(보안관리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존사)	1
전문경력관 나군(상훈관리사)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사)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⑩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국군재정관리단 업무의 지도·감독</u>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⑬ ----- -----.
1. 삭제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신설>	14. <u>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u>
⑭ (생략)	⑭ (현행과 같음)
⑮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⑮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사이버작전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u>	<삭제>
7. 삭제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⑯ (생략)	⑯ (현행과 같음)
제5조(법무관리관) ①·② (생략)	제5조(법무관리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설>	17. <u>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감독</u>
17. (생략)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③ (생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예비역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통제</u>	<삭제>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⑤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	⑦ -----

항을 분장한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u>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업무의 지도·감독</u>
⑧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8. (생 략)	-----.
9. 삭 제	1. ~ 8. (현행과 같음)
10. <u>국방정신교육정책</u> 의 수립·시행과 연구·발전	10. <u>국방 정신전력교육정책</u> -----
11. <u>국방정신교육</u> 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1. <u>국방 정신전력교육</u> -----
12. 부대 및 학교기관의 <u>정훈교육지침</u> 수립과 계획의 조정·통제	12. ----- <u>정신전력교육지침</u> -----
13. <u>정신교육</u>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13. <u>정신전력교육</u> -----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u>국방정신전력원 업무의 지도·감독</u>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⑮ 군비통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u>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u>

	<u>의 지도·감독</u>
⑯ · ⑰ (생 략)	⑯ · ⑰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③ (생 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3. (생 략)	-----.
<신 설>	1. ~ 13.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u>국군인쇄창 업무의 지도·감독</u>
⑤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⑥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 6. 삭 제	⑥ -----
7. ~ 11. (생 략)	-----.
12.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및 <u>관련 조직</u> 의 지도·감독	7. ~ 11.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12. -----
⑪ 병영문화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u>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u> ---
1. ~ 7. (생 략)	---
<신 설>	⑦ ~ ⑩ (현행과 같음)
⑫ ~ ⑲ (생 략)	⑪ -----
	-----.
	1. ~ 7. (현행과 같음)
	8. <u>국방부조사본부의 업무(군기·안전·사고예방분야)의 지도·감독</u>
	⑫ ~ ⑲ (현행과 같음)

